

2011. 3. 21. 의결, 2011. 7. 1. 시행

2023. 4. 24. 수정, 2023. 7. 1. 시행

## 4 공문서범죄 양형기준

공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은 공문서 등 위조 · 변조(형법 제225조), 자격모용 공문서 등 작성(형법 제226조), 허위공문서 작성 · 변개(형법 제227조), 공전자기록 위작 · 변작(형법 제227조의2),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(형법 제228조 제1항), 위 문서 등의 행사(형법 제229조), 공문서 등 부정행사(형법 제230조)의 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 I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## 01 | 공문서 등 위조 · 변조 등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加重
1	비영업적 · 비조직적	4월 – 1년	8월 – 2년	1년6월 – 3년
2	영업적 또는 조직적	1년 – 2년6월	1년6월 – 3년	2년6월 – 5년

구분		감경요소	加重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●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위 · 변조 조직의 우두머리, 간부, 전문 위 · 변조 기술자,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 · 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(2유형)</li> <li>●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 · 변조한 경우</li> <li>●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·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</li> <li>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청각 및 언어 장애인</li> <li>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● 자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동종 누범(사문서범죄 포함)</li> </ul>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소극 가담</li> <li>●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</li> <li>●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행사의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전문 위 · 변조범,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</li> <li>● 위 · 변조 등을 행한자가 당해 위 ·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</li> <li>● 판결문,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 · 변조(다면,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·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)</li> <li>● 전문 위 · 변조 장비(컬러프린터, 스캐너 등)를 사용한 경우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li>● 진지한 반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사문서범죄 포함)</li> </ul>

## 02 | 허위공문서 작성 · 변개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소극적 목적	– 8월	4월 – 10월	8월 – 1년6월
2	적극적 목적	6월 – 1년6월	8월 – 2년	1년6월 – 2년6월

구분		감경요소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●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를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·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</li> <li>●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</li> <li>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청각 및 언어 장애인</li> <li>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● 자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5년 이내 동종 전과(사문서범죄 포함) 또는 징계전력</li> <li>●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</li> </ul>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소극 가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허위공문서 작성·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(표창 수상 등 고려)</li> <li>● 진지한 반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</li> <li>● 이중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사문서범죄 포함)</li> </ul>

## 03 | 공문서 등 부정행사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공문서 등 부정행사	- 6월	4월 – 10월	6월 – 1년6월

구분	감경요소		가중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● 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(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)</li> <li>●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</li> <li>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청각 및 언어 장애인</li> <li>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● 자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동종 누범</li> </ul>
일반 양형 인자	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(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)</li> </ul>
	행위자 /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li>● 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</li> <li>● 진지한 반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사문서범죄 포함)</li> </ul>

## [유형의 정의]

### 01 | 공문서 등 위조 · 변조 등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(이하 같음).

구성요건	적용법조
공문서 등 위조 · 변조 및 동 행사	형법 제225조, 제229조
자격모용 공문서 등 작성 및 동 행사	형법 제226조, 제229조
공전자기록 위작 · 변작 및 동 행사	형법 제227조의2, 제229조
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및 동 행사	형법 제228조 제1항, 제229조

#### 가. 제1유형(비영업적 · 비조직적) : 비영업적 · 비조직적 위조 · 변조행위 등

-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위조 · 변조행위 등

#### 나. 제2유형(영업적 또는 조직적) : 영업적 또는 조직적 위조 · 변조행위 등

- 영업적 또는 조직적이라 함은 위조 · 변조행위를 업으로 하거나, 우두머리 · 알선책 · 전달책 등의 조직을 갖춘 경우를 의미함

### 02 | 허위공문서 작성 · 변개

구성요건	적용법조
허위공문서 작성 · 변개 및 동 행사	형법 제227조, 제229조

#### 가. 제1유형(소극적 목적) : 직무상 편의, 편법적 직무수행, 직무상 과실 은폐 등 소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

- 현지 확인 없이 그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
- 보조자가 행한 행위를 감독자가 직접 담당한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
- 직무상 과실 등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

나. 제2유형(적극적 목적) : 이익을 취득하게 할 적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

- 허위 수사 · 조사 서류 작성
- 피감독자에 대한 편의 제공
- 이익 획득 또는 의도로 허위공문서 작성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

## 03 | 공문서 등 부정행사

구성요건	적용법조
공문서 등 부정행사	형법 제230조

## [양형인자의 정의]

### 01 | 공문서 등 위조 · 변조 등<sup>2)</sup>

#### 가.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
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 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  -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
  -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나.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

-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,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 · 경제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.

#### 다. 위 · 변조 조직의 우두머리, 간부, 전문 위 · 변조 기술자,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 · 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

-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, 간부, 전문 위 · 변조 기술자,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 · 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의미한다.

#### 라.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·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

-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,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,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· 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.

2) 허위공문서 작성 · 변조, 공문서 등 부정행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.

### 마. 소극 가담

-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### 바.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

-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를 의미한다(예를 들어, 권리의 소멸과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한 날짜 변조 등).

### 사. 전문 위 · 변조범,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

- 피고인은 전문 위 · 변조범 내지 위 · 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, 전문적인 위 · 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 · 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 · 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(예를 들어,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· 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 · 변조를 의뢰하거나 위 · 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 · 변조를 의뢰한 경우).

### 아. 판결문,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 · 변조(다만,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·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)

- 위 · 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판결문, 여권, 중요 지위에 관한 신분증명서, 특허증, 인감증명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를 의미한다(다만,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·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).

### 자. 진지한 반성

-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,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,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### 차. 형사처벌 전력 없음

-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. 다만,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.

## 02 | 허위공문서 작성 · 변개

### 가.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
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 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  -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
  -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
  - 종전의 담당자, 주위의 유사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만연히 따른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나.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

- 외부 범죄조직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· 변개를 저지를 경우를 의미한다.

### 다.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·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수사기밀의 누설로 인하여 심각한 수사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
  -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  - 허위공문서로 인하여 행정조치나 인 · 혜가가 이루어져 그로 인한 상당한 폐해가 발생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 03 | 공문서 등 부정행사

### 가.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

- 공문서 부정행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※ 공문서 부정행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에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자격사칭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.

### 나.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(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)

- 부정행사의 목적이 된 공문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중 취득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(친족상도례, 피해자의 불특정 등)를 의미한다.

## 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

### 01 |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-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  -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 한다.
  -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  - 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-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### 02 | 선고형의 결정방법

-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## [공통원칙]

### 01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

-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-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### 02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-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### 03 |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

-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## [다수범죄 처리기준]

### 01 | 적용범위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### 02 | 기본범죄 결정

- 기본범죄는 혐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### 03 | 처리방법

-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
-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 $1/2$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-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 $1/2$ 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 $1/3$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-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
※ 공문서 위·변조,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·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.

## Ⅱ. 집행유예 기준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동종 전과(5년 이내) 또는 동종 징계전력</li> <li>● 판결문,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</li> <li>●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</li> <li>●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●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·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</li> <li>● 현저한 개전의 정(자수, 자백, 내부비리 고발 등)</li> <li>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
일반 참작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</li> <li>● 공법으로서 주도적 역할</li> <li>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</li> <li>●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</li> <li>● 진지한 반성 없음</li> <li>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</li> <li>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</li> <li>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</li> <li>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</li> <li>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</li> <li>● 진지한 반성</li> <li>●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 (허위공문서 작성·변개 유형)</li> </ul>

## 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]

-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
  -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.
- 전과의 기간 계산
  -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,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.

## 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]

-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 -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  -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  -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(긍정)사유와 일반긍정(부정)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(부정)사유와 주요부정(긍정)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

